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실사보고서

1994.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실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8. 1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8. 24.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 9.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이춘기)

가. 제출이유

- 마포구 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안, 제3조 1항).
-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1항, 제2항)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 보상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함.
-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은 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사망 등의 보상 규정 신설과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신설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유남렬 위원) : 보상기준이 구 의원도 시·도 의원에 준하게 되나?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우리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내무부 등에 문의한 바 시행령에 따라 시·도 의원에 준하게 됩니다.
- 질문(이봉형 위원) : 안 제3조2항에 “공무상재해인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국가가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에는 1~14등급까지 있습니다.
- 질문(유남렬 위원) : 공무상 다쳐서 치료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상비 모두 보상받게 되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치료비와 보상비 중 많은 금액을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택일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동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323
------------	-----

제출년월일 : 1994. 8월 19일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정이유

마포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 나.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1항, 제2항)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 보상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함.
- 다.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동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함(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조례(안) : 별첨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32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제15조의2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보상금 및 위원수당 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 3 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 4 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 5 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6 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 7 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8 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 9 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 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총무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 11 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12 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 할 수 없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점 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주 민 등 륙 번 호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주 민 등 륙 번 호		
청 구 자	성 명			주 민 등 륙 번 호		
	주 소		□□□-□□□			전화번호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 상 금 수령 금 용 기 관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상 병 장 소		상 병 년 월 일 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직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결정)				
심의결과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직 책	성 명	날 인	비 교	
	위 원 장				
	위 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